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 수시

■ 정시

■ 재외국민과 외국인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주요사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추후 <최종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I. 주요 사항

- 수시 주요변경 사항 4
- 정시 주요변경 사항 8
- 학생부교과전형 전형방법 9
-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방법 10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1
-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12

II. 수시

- 학생부교과(한동인재) 14
- 학생부교과(지역인재) 15
-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16
-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정원외) 17
-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18
- 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 19
- 학생부종합(대안학교) 20
-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및배려자) 21
- 학생부종합(고른기회) 23
-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25

III. 정시

- 수능(일반학생) 27
-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28
-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30

IV. 재외국민과 외국인

- 재외국민(3월 입학)(정원외) 32
- 전교육과정 이수자(3월/9월 입학)(정원외) 36
- 북한이탈주민(3월 입학)(정원외) 38
- 외국인(3월/9월 입학)(정원외) 39

PART 1. 주요사항

1. 수시 주요변경 사항
2. 정시 주요변경 사항
3.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방법
4. 학생부교과전형 평가방법
5.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6.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 수시 주요변경 사항

1] 전형요소별 모집인원

2021학년도			
구분	전형요소	인원	비율
수시	학생부교과	150	19.2
	학생부종합	474	60.5
	실기실적	110	14.0
	기타 (재외국민)	14	1.8
정시	수능위주	35	4.5
합계		783	100

2022학년도			
구분	전형요소	인원	비율
수시	학생부교과	235	30.0
	학생부종합	479	61.2
	실기실적 *	0	0
	기타 (재외국민)	14	1.8
정시	수능위주	55	7.0
합계		783	100

* 기존에 실기실적(특기자)이었던 해외학생/해외선교사자녀 전형을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선발함

2] 전형요소별 전형명

2021학년도	
전형요소	전형명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한동인재)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정원외)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지역인재)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학생부종합(대안학교)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학생부종합(고른기회)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실기 실적	실기실적(해외학생)
	실기실적(해외선교사자녀)
수능	수능(일반학생)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2022학년도	
전형요소	전형명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한동인재)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정원외)
	학생부교과(지역인재)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학생부종합(대안학교)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학생부종합(고른기회)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
수능	수능(일반학생)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3 전형별 모집인원

시기	전형 요소	전형명	인원	증감	비고
수시	학생부교과	<u>학생부교과(한동인재)</u>	135	+ 25	
		<u>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u>	20	+ 5	
		<u>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정원외)</u>	20	- 5	
		학생부교과(지역인재)	60		교과전형으로 변경
	학생부종합	<u>학생부종합(G-IMPACT인재)</u>	240	- 29	
		학생부종합(대안학교)	75		
		<u>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u>	40	- 10	지원자격 확대
		<u>학생부종합(고른기회)</u>	34	+ 24	지원자격 확대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10		
		<u>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u>	80	- 30	지원자격 확대
기타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14			
정시	수능	<u>수능(일반학생)</u>	55	+ 20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	0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	0		
합계			783		

* 별도의 모집인원은 없으며, 수시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 미충원 시 이월하여 선발함

4 지원 자격 확대

□ 학생부종합 (글로벌인재)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실기 실적 (해외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고에서 통산 1년 이상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초·중고 통산 2년 이상 이수한 자 	▶	학생부 종합 (글로벌 인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고등학교 <u>졸업(예정)자</u> • 해외에서 <u>초·중고 통산 1년</u> 이상 이수한자 • 국내소재 <u>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u> 졸업(예정)자
실기 실적 (해외 선교사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통산 1년 이상 선교사 파송을 받은 자의 자녀로 아래 수학기간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해외고에서 통산 1년 이상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초·중고 통산 2년 이상 이수한 자 			

□ 학생부종합 (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2021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u>국내 검정고시 출신자</u>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상 근무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직업군인,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도관공무원, 환경미화원, 집배원) -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통산 2년 이상 도서벽지에서 근무한 공무원의 자녀 -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의 자녀 - 장애인의 자녀 - 다문화 가정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조손가정의 손자녀 - 민주화운동관련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통산 1년 이상 시무한 자</u>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u>농어촌소재교회 전임목회자, 미자립교회 전임목회자, 국내단체에서 국내·외로 파송한 선교사</u>

2022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u>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u>로서,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u>국내외 교단, 교회, 단체에서 파송된 경력이 있는 선교사</u> • <u>농어촌교회 또는 미자립교회에서 시무한 경력이 있는 목회자</u>

□ 학생부종합 (고른기회)

2021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보훈 대상자 • 농어촌학생 대상자 • 기회균형선발 대상자
-

2022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와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u> • <u>서해5도 학생</u> • <u>만학도(만 23세 이상)</u>

5 면접 배수

2021학년도			2022학년도		
구분	전형명	선발 비율	구분	전형명	선발 비율
수시	학생부종합(대안학교) 실기(해외학생) 실기(해외선교사자녀)	200%	수시	<u>학생부종합(대안학교)</u> <u>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u> <u>학생부종합(G-IMPACT인재)</u> <u>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및배려자)</u> <u>학생부종합(고른기회)</u> <u>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u>	250%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학생부종합(지역인재)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및배려자) 학생부종합(고른기회)	250%		재외국민	300%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재외국민 학생부교과(한동인재)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	300%		학생부교과(한동인재)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 학생부교과(지역인재)	면접 미 실시

6 수능최저 설정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전형명	전형명	수능최저
수능 최저 없음 (전 전형)	학생부교과(한동인재) 학생부교과(지역인재)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u>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u> 또는 <u>1개 영역 1등급</u>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u>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u> 또는 <u>1개 영역 2등급 이내</u>
	그 외 전 전형	수능 최저 없음

2. 정시 주요변경 사항

1. 선발인원 : 일반학생 55명

2021학년도
수능(일반학생) 35명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0명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0명



2022학년도
<u>수능(일반학생) 55명</u>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0명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0명

2. 수능 영역별 반영비율

2021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 35 % 수학 : 35 % 영어 : 30 % 사회/과학탐구 : 미반영



2022학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 : 35 % 수학 : 35 % <u>영어 : 20 %</u> <u>사회/과학탐구(한과목) : 10%</u>

3. 수학 가산점

2021학년도
수학 '가형'에 10% 가산점



2022학년도
<u>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시</u> <u>10% 가산점</u>

4. 영어 등급별 반영점수

2021학년도
1등급(100점), 2등급(96점), 3등급(92점), 4등급(88점), 5등급(84점), 6등급(80점), 7등급(76점), 8등급(72점), 9등급(68점)



2022학년도
<u>1등급(100점), 2등급(95점), 3등급(90점),</u> <u>4등급(80점), 5등급(70점), 6등급(60점),</u> <u>7등급(50점), 8등급(40점), 9등급(30점)</u>

3. 학생부교과전형 전형방법

1 학생부 교과성적 반영교과

반영교과*		반영방법	점수활용 지표**
일반과목 (진로선택을 제외한 과목)	1) 국어, 2) 영어, 3) 수학, 4) 사회 또는 과학 중 우수한 교과	반영교과의 전 과목을 학년 구분 없이 이수단위 합으로 반영	석차등급
진로선택과목	전 교과	전 교과의 진로선택과목 중 최고점 3과목을 가산점으로 반영	성취평가등급

* 반영교과는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교과항목에 표시된 대로 반영함

** 등급별 배점구간은 추후 모집요강 참조

2 학생부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학생부 요소별 반영비율	반영 범위	고교졸업년도
교과성적 100	3학년 1학기까지 반영 (재수생 포함)	제한없음

3 학생부 교과성적 산출방법

① 일반과목 ② 진로선택과목(가산점)

$$\frac{\sum(\text{교과별 반영과목 석차등급점수} \times \text{이수단위})}{\sum(\text{이수단위})} \qquad \frac{\sum(\text{진로선택 최고점 3과목의 성취등급 환산점수})}{3}$$

③ 최종 점수 : 일반과목 점수 × 6(가중치) + 400(기본점수) + 진로선택과목 가산점

4 비교내신 적용대상자 반영방법

전형명	전형대상	반영방법
학생부교과(한동인재) 학생부교과(지역인재)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2014년 2월 이전 졸업자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추후 모집요강 참조)
학생부교과 (기회균형선발)	1. 검정고시 출신자 2. 그외	1. 검정고시 출신자 - 필수과목: 6과목(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 - 환산점수: 원점수 96점 이상(77점으로 환산), 원점수 95~91점(60점으로 환산), 원점수 90~86점(40점으로 환산), 원점수 85~81점(23점으로 환산), 원점수 80~76점(11점으로 환산), 원점수 75점 이하(0점으로 환산) 2. 그 외 : 자체기준에 따라 처리(추후 모집요강 참조)

5 수능최저 설정

전형명	수능최저
학생부교과(한동인재) 학생부교과(지역인재)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또는 1개 영역 1등급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또는 1개 영역 2등급 이내

4. 학생부종합전형 전형방법

① 1단계 서류심사

서류심사는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등에 나타난 인성, 동기, 성장잠재력, 학업능력 등을 본교 교육 이념 및 인재상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자기소개서 작성방법

- 1)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고 정해진 원칙과 글자 수 범위 내에서 작성해 주세요.
- 2) 고교 재학 중 교내 활동 과정과 느낀 점을 중심으로 작성해 주세요. 고교 재학 경험이 없는 경우(검정고시 등)에는 최근 3년간의 활동을 중심으로 기술하시면 됩니다.
- 3) 자기소개서 표절·대필·허위는 엄격하게 금지되며 서류심사 감점 및 1단계 불합격, 합격취소 또는 입학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꼭 자기의 이야기를 본인이 작성해 주세요. 자기소개서 샘플도 그대로 따라하면 안되어요!
- 4)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에 공지된 기재금지사항(교외 활동, 부모·친인척 직업 등)도 작성하지 말아 주세요.
- 5) 자기소개서 미작성 또는 현저히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성실히 작성해 주세요.

▶ 제출서류

전형명		공통	기타
학생부 종합	소프트웨어인재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없음
	대안학교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G-IMPACT인재 글로벌인재 고른기회 사회기여자및배려자		검정고시/해외고 졸업자(해당서류 제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선택서류 등

- 기타 자격과 관련된 서류는 추후 모집요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2단계 면접고사

면접고사는 서류심사와 함께 학생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방법으로 본교는 개별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인성 및 창의성을 평가합니다.

- 면접방법: 면접위원 2인이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
- 면접기준
 - 평가영역: 인성 및 창의성
 - 평가항목: 본교 인재상 부합도, 의사소통 및 면접태도, 논리성, 발전가능성

5.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개설 학부	모집단위	전형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인문사회계열 경영경제학부 경영학전공 경제학전공 Global Management전공 국제어문학부 국제지역학전공 영어전공 법학부 한국법전공 US and International Law전공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상담심리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 언론정보문화학부 언론정보학전공 공연영상학전공 창의융합교육원 글로벌융합전공 글로벌한국학전공 학생설계융합전공	전 학부	[수시] 학생부 위주 (교과)	학생부교과(한동인재)	135
			학생부교과(지역인재)	60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20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정원외)	20
		[수시] 학생부 위주 (종합)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240
			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	80
			학생부종합(대안학교)	75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40
			학생부종합(고른기회)	34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10
			재외국민(정원외)	14
		[수시] 기타	전교육과정 이수자(정원외)	제한없음
			외국인(정원외)	제한없음
			북한이탈주민(정원외)	제한없음
		[정시] 수능 위주	수능(일반학생)	55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0 *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0 *			
합 계				783명

* US & International Law전공, Global Management전공, Information Technology전공, 글로벌융합전공은 100% 영어 강의 전공입니다.

- 신입생 100% 전 학부 자율전공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 학부 자율전공은 입학 시 전공을 정하지 않고, 2학년 진학 시에 계열의 구분 없이 학생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단위입니다.
- 모집학부 및 전공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부 및 전공 명칭 변경사항은 우리 대학교 입학 홈페이지(<http://admissions.handong.edu>)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시 전형(정원 내)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정시 수능(일반학생)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 * 수시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과 수시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 수능(농어촌학생)과 정시 수능(기회균형선발)으로 각각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 *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6.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인원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1단계 선발비율	수능 최저
수시	학생부 위주 (교과)	학생부교과(한동인재)	135	학생부 교과 100	-	있음
		학생부교과(지역인재)	60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20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정원외)	20			
	학생부 위주 (종합)	학생부종합(G-IMPACT인재)	240	1단계: 서류100 2단계: 서류70 면접30	250%	없음
		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	80			
		학생부종합(대안학교)	75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40			
		학생부종합(고른기회)	34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10			
	기타	재외국민(정원외)	14	제한없음	300%	없음
		전교육과정 이수자(정원외)	제한없음		제한없음	
		외국인(정원외)	제한없음	1단계: 서류100 2단계: 서류50 면접50		
		북한이탈주민(정원외)	제한없음	일괄합산 (서류40, 면접60)		
정시	수능 위주	수능(일반학생)	55	수능 100	-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0 *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0 *			

* 수시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과 수시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 수능(농어촌학생)과 정시 수능(기회균형선발)으로 각각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 원서접수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PART 2. 수시

1. 학생부교과(한동인재)
2. 학생부교과(지역인재)
3.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4.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정원외)
5. 학생부종합(G-IMPACT인재)(정원외)
6. 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
7. 학생부종합(대안학교)
8.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및배려자)
9. 학생부종합(고른기회)
10.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인재)

1. 학생부교과(한동인재)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135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3개 학기 이상의 국내 고등학교 성적이 모두 있는 자

- 일반고·종합고의 전문계과정·위탁교육 이수자, 예체고,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각종학교, 검정고시 출신자, 학생부 전산 미제공 고교 지원 불가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또는 1개 영역 1등급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일괄합산	100%	학생부교과 10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2. 학생부교과(지역인재)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60명

2. 지원자격

대구·경북권 소재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대구·경북권 소재 정규고등학교에서 3년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고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3년 전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또는 1개 영역 1등급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일괄합산	100%	학생부교과 10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3.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정원외)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20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중·고등학교 6년 거주자(부모 거주)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 예정자 포함)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부모 비거주)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읍·면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을 의미함(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신활력지역의 동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는 제외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학교를 입학일 이후 전편입학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부모의 이혼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전의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의 주민등록상에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함(단, 이 경우 부나 모 한쪽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부모의 사망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 또는 모(전체)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학생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직장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또는 1개 영역 2등급 이내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일괄합산	100%	학생부교과 10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4.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정원외)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20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 수능 4개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과학 중 1개 과목)] 중 2개 영역 합 6등급 이내 또는 1개 영역 2등급 이내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일괄합산	100%	학생부교과 100%

5. 전형방법

- 9페이지 참조

5. 학생부종합합(G-IMPACT인재)

학생부종합전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240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10페이지 참조

6. 학생부종합(글로벌인재)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80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해외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 해외에서 초·중·고 통산 1년 이상 이수한 자
- 3) 국내소재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 졸업(예정)자

- 해외수학기간은 졸업(예정)일 기준으로 산정함
- 해외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한 학교이어야 함
- 해외학교 과정 인정기준 : 해당국 교육관계법령에 의거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정규학교 과정만을 인정하며,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 대학예비과정, 평생교육과정, 성인대학과정, 통신교육과정, 인터넷교육과정, 홈스쿨과정 등은 제외함
- 해외이수기간 산정 시 월반, 조기졸업으로 인한 기간은 이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국내소재 외국교육기관, 외국인학교, 특별법에 의한 국제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는 교육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사이트(<https://www.isi.go.kr/>)에서 확인 가능함
- 위의 학교 졸업자 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98조 제1항 제9호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없는 자는 국내 고졸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함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10페이지 참조

7. 학생부종합합(대안학교)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75명

2. 지원자격

아래 국내 대안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졸업(예정)일 기준으로 대안학교의 2개 학기 이상 학교생활기록부가 있는 자

-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의한 대안교육 특성화 고등학교
-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3의 대안학교
- 3) 비인가 대안학교 : 국내 소재의 학교만 지원이 가능함. 단, 비인가 대안학교 출신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야 함

- 국내 대안학교의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10~12학년) 교육과정의 졸업(예정)자를 말함
- 2개 학기란 1년 2학기제에서 2개 학기를 의미하며, 1년 3학기제의 경우 총 3개 학기, 1년 4학기제의 경우에는 총 4개 학기를 의미함
- 학기 인정 범위는 정규학기를 의미하며, 계절학기, 월반, 조기졸업으로 인한 기간은 학기 수로 인정하지 않음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10페이지 참조

8. 학생부종합(사회기여자 및 배려자)

학생부종합전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40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5년 이상 근무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① 직업군인 : 「군인사법」 제2조(적용범위) 1호에 해당되는 자
 - ② 소방공무원 : 「소방공무원법」 제3조(계급구분)에 해당되는 자
 - ③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법」 제2조(계급구분)에 해당되는 자
 - ④ 교도관공무원 : 「교도관직무규칙」 제2조(정의)에 해당되는 자
 - ⑤ 환경미화원 : 시·군·구청 소속 별정직 근무원
 - ⑥ 집배원 : 우정사업본부(소속기관포함) 또는 별정우체국 소속 근무원

- 2)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일 이후 통산 2년 이상 도서·벽지에서 근무한 공무원(일반직, 교육직)의 자녀
 - ① 교육공무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의 [별표] 도서·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참조
 - ② 일반공무원 :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제2조의 [별표1]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등급 구분표 참조

- 3)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 ① 국내외 교단, 교회, 단체에서 파송된 경력이 있는 선교사
 - ② 농어촌 교회 또는 미자립 교회에서 시무한 경력이 있는 목회자
 - 농어촌지역은 읍면 소재만 인정하며, 신활력지역의 동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시무 중 또는 시무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으로 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함
 - 미자립 교회는 교단, 단체 등에서 미자립으로 인정한 교회만 인정함
 - 한국기성교단으로부터 이단판정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자의 자녀는 지원자격이 되지 않음

- 4) 다자녀(3자녀 이상) 가정 자녀

- 5) 다문화가정 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 단,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가 과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자녀

- 7) 장애인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인의 자녀

8)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북한이탈주민확인서 발급가능한 자)의 자녀

9) 조손가정의 손자녀 :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손자, 손녀로 구성된 가족으로 부모 모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손자녀

- 주민등록등본상 (외)조부모와 지원자(손자, 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함

10) 민주화운동관련자 본인 또는 그의 자녀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증서 발급 가능한자) 또는 그의 자녀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10페이지 참조

9. 학생부종합(고른기회)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34명

2. 지원자격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국가보훈대상자 :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를 통해 지원자격을 심사함

- 2) 농어촌학생 :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중·고등학교 6년 거주자(부모 거주)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②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부모 비거주)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읍·면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을 의미함(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신활력지역의 동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는 제외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학교를 입학일 이후 전편입학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부모의 이혼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전의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의 주민등록상에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함(단, 이 경우 부나 모 한쪽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부모의 사망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 또는 모(전체)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학생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직장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기회균형선발 :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특성화고교 졸업자 : 국내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본교의 모집 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기준학과를 졸업한 자
- ② 본교의 모집 단위와 동일한 계열의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자

- 동일계열 및 기준학과 : 추후 수시 모집요강 참조
- 특성화고등학교 범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단,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는 제외됨
 - 특성화고등학교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과가 있는 일반고(종합고)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는 제외됨

5) 서해5도 학생 :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서해5도에서 「민법」 제909조에 따른 친권자 또는 같은 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② 서해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5도에 설립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6) 만학도 :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2022.3.1 기준으로 만 23세 이상인 자(1999.3.1 이전에 출생한 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10페이지 참조

10. 학생부종합합(소프트웨어인재)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10명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소프트웨어 분야에 잠재력을 갖춘 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250%	100%	-
2단계	100%	70%	30%

5. 전형방법

- 10페이지 참조

PART 3. 정시

1. 수능(일반학생)
2.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3.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1. 수능(일반학생)

정시(다)군 수능위주 전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55명

* 2022학년도 수시 전형(정원 내)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다)군 수능(일반학생)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정시(다)군으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다)군 원서접수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한 과목 이상, 한국사에 모두 응시해야 함)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일괄합산	100%	100%

5. 수능 반영방법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 (1개 과목)	한국사
35%	35%	20%	10%	등급별가산점

*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시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함

* 탐구영역은 사탐과 과탐 중 우수한 1개 과목을 자동 반영함

나.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탐구영역의 변환점수와 한국사 가산점을 합산하여 성적 순으로 100%를 선발합니다.

①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백분위를 반영합니다.

② 영어영역은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0	95	90	80	70	60	50	40	30

③ 한국사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점				9.8점	9.6점	9.4점	9.2점	9점

6. 성적산출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sum(\text{영역별 반영점수} \times \text{반영비율}) \times 10 + \text{한국사가산점}$

- 1,000점 만점. 단, 가산점을 받을 경우 1,045점까지 가능함.

- 기본점수 없음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2. 수능(농어촌학생)(정원외)

정시(다)군 수능위주 전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0명

*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전형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다)군 수능(농어촌학생)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정시(다)군으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다)군 원서접수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한 과목 이상), 한국사에 모두 응시해야 함)

- 1) 중·고등학교 6년 거주자(부모 거주) :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2) 초·중·고등학교 12년 거주자(부모 비거주) : 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졸업예정자 포함)까지 지원자 본인이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로서 농어촌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읍·면 지역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읍·면을 의미함(광역시, 도, 도·농 통합시 관할구역 안에 두는 읍·면을 포함)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도서·벽지도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함
- 신활력지역의 동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인정하지 않음
- 읍·면 소재 고등학교 중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체육고, 예술고)는 제외함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행정구역이 개편된 경우에는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함
-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학교를 입학일 이후 전·편입학한 경우 지원할 수 없음
- 부모의 이혼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전의 부모의 주소지와 이혼 후의 주민등록상에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나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함(단, 이 경우 부나 모 한쪽에 계속 거주하여야 함)
- 부모의 사망 시 부모 거주 관련 사항 : 중·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부 또는 모(전체)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사망일 이전까지의 주소지가 농어촌지역이어야 하며, 지원자 본인과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야 함
- 농어촌학생 전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형을 운영하기 위해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직장소재지에 대한 입증자료 등의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일괄합산	100%	100%

5. 수능반영방법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 (1개 과목)	한국사
35%	35%	20%	10%	등급별가산점

- *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시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함
- * 탐구영역은 사탐과 과탐 중 우수한 1개 과목을 자동 반영함

나.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탐구영역의 변환점수와 한국사 가산점을 합산하여 성적 순으로 100%를 선발합니다.

- ①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백분위를 반영합니다.
- ② 영어영역은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0	95	90	80	70	60	50	40	30

- ③ 한국사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점				9.8점	9.6점	9.4점	9.2점	9점

6. 성적산출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sum(\text{영역별 반영점수} \times \text{반영비율}) \times 10 + \text{한국사가산점}$

- 1,000점 만점. 단, 가산점을 받을 경우 1,045점까지 가능함.
- 기본점수 없음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3. 수능(기회균형선발)(정원외)

정시(다)군 수능위주 전형

1.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0명

* 2022학년도 수시 학생부교과(기회균형선발) 전형에서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 인원은 정시(다)군 수능(기회균형선발) 전형으로 이월하여 선발합니다. 정시(다)군으로 이월된 모집인원은 정시(다)군 원서접수기간 전에 입학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2. 지원자격

국내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회탐구 또는 과학탐구 중 한 과목 이상), 한국사에 모두 응시해야 함)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차상위계층)에 의한 대상자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음

4.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대학수학능력시험
일괄합산	100%	100%

5. 수능반영방법

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방법

국어	수학	영어	사탐/과탐 (1개 과목)	한국사
35%	35%	20%	10%	등급별가산점

* 수학 미적분 또는 기하 선택 시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함

* 탐구영역은 사탐과 과탐 중 우수한 1개 과목을 자동 반영함

나. 국어영역, 수학영역, 영어영역, 탐구영역의 변환점수와 한국사 가산점을 합산하여 성적 순으로 100%를 선발합니다.

① 국어, 수학, 탐구영역은 백분위를 반영합니다.

② 영어영역은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0	95	90	80	70	60	50	40	30

③ 한국사는 아래 등급별 점수를 반영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점				9.8점	9.6점	9.4점	9.2점	9점

6. 성적산출방법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 $\sum(\text{영역별 반영점수} \times \text{반영비율}) \times 10 + \text{한국사가산점}$

- 1,000점 만점. 단, 가산점을 받을 경우 1,045점까지 가능함.

- 기본점수 없음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PART 4. 재외국민과 외국인

1. 재외국민 (3월 입학, 정원외)
2. 전교육과정 이수자 (3월/9월 입학, 정원외)
3. 북한이탈주민 (3월 입학, 정원외)
4. 외국인 (3월/9월 입학, 정원외)

1. 재외국민(3월 입학, 정원외)

가.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14명

나. 지원자격

초·중·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내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을 충족하는 자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충족)
- 외국 교육과정의 이수기간(학생재학기간) 산정 시 월반, 조기졸업으로 인한 기간은 이수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초·중·고교과정 중의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대상	해외 기간 (연속 · 비연속)		
		재학	근무	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교포의 자녀 ▪ 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 기타 재외국민및외국인의 자녀 - 자영업, 현지법인, 해외파견 교직원, 해외 선교사, 외국유학연수자 	학생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이상
	해외 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이상
	배우자	-	-	-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이상의 해외 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 재학기간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하는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365일)이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봄
해외 체류일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학기 개시일로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로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로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참고> 재외국민 전형 지원자격 심사기준

1. 재외국민전형 지원자 및 부모의 해외재학기간, 해외근무기간, 해외체류기간 산정 방법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해외근무 확인서류, 재학기간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2. 재외국민전형 최저 해외 재학·근무·체류기간

- 부모의 근무기간, 체류기간은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합니다.
 - 해외재학기간: 학교 성적표상에 기재된 재학기간
 - 해외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발령일까지의 기간
 - 해외체류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상에 기재된 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

3. 해외근무자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인정범위

- 소속기관장의 인사발령에 의한 외국근무자에 대해서만 외국근무 재외국민의 지원자격을 인정합니다.

구 분	지원자격 인정범위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상사주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정부파견 의사, 언론기관 특파원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근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또는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4. 해외재학으로 인정하는 학교

- 외국의 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보호자의 해외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다만, 보호자 근무국의 전쟁,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에 대해서만 학력을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과 사이버(통신)교육과정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5. 외국학교 인정기준

-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 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 외국의 1 ~ 6학년 과정(Grade 1 ~ Grade 6):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Grade 7 ~ Grade 9): 중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13)학년 과정(Grade 10 ~ Grade 12(13)): 고등학교 과정

6. 고교 졸업예정자 자격인정 기준시점

- 고교 졸업예정자의 자격인정 기준은 고교 졸업일까지의 재학기간, 외국거주 및 체류기간으로 합니다. 최종합격자 중 고교 졸업예정자는 졸업 직후 재학기간과 체류기간에 대한 증빙자료(지원자격에 관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전형기간 중 지원자와 보호자의 자격요건 상실 시 합격(입학)을 취소합니다.

※ 지원자격 특이사항의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300%	100%	-
2단계	100%	70%	30%

라. 전형방법

- 1) 1단계 전형 : 서류심사
 -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서류심사로 2단계 면접고사 대상자를 300% 선발합니다.
 - 사정의 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 2) 2단계 전형 : 면접고사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서 성적순으로 모집 인원의 100%를 선발합니다.
 -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선발합니다.
 - 평가영역 : 인성 및 창의성

마. 제출서류 -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차후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출서류	제출대상 및 주요사항	제출방법
모든 지원자	입학원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컬러사진 업로드 	인터넷 제출
	자기소개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원서접수 완료 후 원서접수 사이트의 '내 원서보관함' 메뉴에서 작성 가능하며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수정 가능 	
	수학기간기록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대학교 소정 양식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수학기간을 기록하여야 함 	인터넷작성 & 우편제출
	초·중고등학교 재학사실증명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사실증명서에는 수학 학년, 학기, 수학 기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초·중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함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함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후 최종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 학교생활증명서(Resume 등)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출신교의 양식이 없는 경우 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 활용 가능 AP/ IB Diploma/ GCE A-Level/ SAT/ ACT / NCEA/ Baccalaureat/ Abitur 등 국가별 표준 대입시험 성적은 추가로 제출 가능함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장(High School Diploma)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조기졸업예정자는 조기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 	
	고등학교 학교소개서 (High School Profile)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학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성적체계(Grade Scale), 학생수, 진로현황, 심화과목 운영 현황, 학제 등이 나타나야 함 2개 이상 고교에 재학한 경우 재학한 고교별로 모두 제출(해당자)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 제출 가능 영어 또는 한국어로 제출 가능 	
	부, 모 학생의 출입국사실증명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또는 인터넷(www.minwon.go.kr 등) 발급 가능 최초 출입국부터 원서 접수전까지 출입국 내용이 반드시 모두 포함되어야 함 국적 변동 등으로 인해 동일여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출입국 사실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 모 학생의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열람 신청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모 학생 각 1부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주교포는 주민등록말소등본으로 대체 가능 		
부, 모 학생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아래 해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가 가능함 -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지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체류자격이 명시된 비자(사증) - 해외체류기간이 명시된 부모의 재직증명서 또는 해당국 임대차 계약서 -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또는 거주사실 증명서 - 해당국 외국인등록증,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 		
부, 모 학생의 여권사본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모 학생 각 1부 제출 		
지원 자격 확인 서류	보호자의 해외체류 증명서류 1부	영주교포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 재직증명서(해당국가 및 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부, 모 학생의 영주권 사본 각 1부 제출
		공무원, 외국정부,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 재직증명서(해당국가 및 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상사직원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 재직증명서(해당국가 및 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 사본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 재직증명서(해당국가 및 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기타 재외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영업자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해외 세금납입증명서 현지법인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재직회사의 법인세납부이력 및 보호자 재직증명서 해외파견 교직원 - 보호자 재직증명서(해당국가 및 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해외선교활동 - 보호자 재직증명서(해당국가 및 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파송장이 아닌 소속 기관(교회, 교단, 단체 등)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외국유학연수자 - 보호자 재직증명서(해당국가 및 외국 유학연수기간 명시)
코로나-19 관련 소명자료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직기간, 재학기간, 체류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이 발생한 경우 - 해외근무자 소명자료 : 이름, 재직기관명, 휴업기간, 휴업사유 기재 - 학생 소명자료: 이름, 학교명, 휴교기간, 휴교사유 기재 · 해당 자료에는 관련 기관장의 직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함 · 소명자료 확인 후,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선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택서류 예시: 공인어학성적, 봉사활동, 리더십활동, 동아리활동, 수상실적, 특별활동 등 활동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서식(활동증명서)으로 제출 가능함 선택서류 작성에 대한 자세한 유의사항은 차후 모집요강 참조 		

2. 전교육과정 이수자(3월/9월 입학, 정원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가.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제한 없음

나. 지원자격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하고 국외 정규고등학교 졸업(예정)인 재외국민 및 외국인, 결혼이주민(「국적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합니다.(총 23학기, 11년 6개월 이상 총축)(「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2항제2호, 제7호 적용)

1. 해외 1개국 내 학제가 동일한 학교에서 초·중·고 전 과정을 이수한 자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내 초·중등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해외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방학, 해외 학교 및 해당 국가에서 정한 휴일에 국내에 임시로 체류하는 경우에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 해외의 한 국가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연한이 12년이 되지 않더라도 전 교육과정 이수자로 인정합니다.

2. 해외에서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학년제	인정여부 및 인정조건	비고
10학년 이하	미인정	단,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11학년제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12학년제	- 단, 2개국 이상에서 11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해야 인정	
13학년 이상	10학년~12학년 또는 11학년~13학년을 해당국에서 이수한 경우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부족한 학교 교육과정: 해당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단 학제가 다른 2개 학교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과정을 이수한 자가 전·편입학 하는 과정에서 학제 차이로 불가피하게 총 재학기간이 누락된 경우 1학기(6개월) 이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참고> 해외재학으로 인정하는 학교

- 외국의 학교는 국외에 소재한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학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설립·운영되는 초·중등 교육과정의 정규학교에 대해서만 학력을 인정합니다.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과정과 사이버(통신)교육과정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지원자격 특이사항의 경우,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제한없음	100%	-
2단계	제한없음	70%	30%

라. 전형방법

- 1) 1단계 전형 : 서류심사
 -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사정의 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2) 2단계 전형 : 면접고사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서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최종 합격 인원은 2단계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예비 후보자 및 총원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 평가영역 : 인성 및 창의성

마. 제출서류

-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차후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주요사항	제출 방법
입학원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컬러사진 업로드 	인터넷 원서 접수 시 제출
자기소개서 1부		
수학기간기록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 ▪ 초·중·고등학교 전 과정 수학기간을 기록하여야 함 	인터넷 작성 및 우편 제출
지원자의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 최초출국부터 원서접수 전까지 출입국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함 	우편 제출
지원자의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1부		
초·중·고등학교 재학사실증명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학 학년, 학기, 수학 기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초·중학교 성적증명서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함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학교 또는 재외한국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 후 최종 성적증명서 추가 제출 ▪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 학교생활증명서(Resume 등)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출신교의 양식이 없는 경우 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 활용 가능 ▪ AP/ IB Diploma/ GCE A-Level/ SAT/ ACT / NCEA/ Baccalaureat/ Abitur 등 국가별 표준 대입시험 성적은 추가로 제출 가능함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장(High School Diploma)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예정자는 졸업 후 졸업증명서 추가 제출 ▪ 조기졸업예정자는 조기졸업예정증명서로 제출 가능 	
고등학교 학교소개서 (High School Profile)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성적체계(Grade Scale), 학생수, 진로현황, 심화과목 운영 현황, 학제 등이 나타나야 함 ▪ 2개 이상 고교에 재학한 경우 재학한 고교별로 모두 제출(해당자) ▪ 홈페이지 출력물, 브로셔 등 제출 가능 ▪ 영어 또는 한국어로 제출 가능 	
신분증사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으로 제출 가능 ▪ 국적이 외국인인 경우: 시민권 또는 외국국적증명서 추가 제출 ▪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인 경우: 국적취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출입국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 발급) 	
코로나-19 관련 소명자료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학기간 등 지원자격 미충족이 발생한 경우 - 해당 자료에는 이름, 학교명, 휴교기간, 휴교사유가 기재되어 있어야 함 · 해당 자료에는 학교장의 직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함 · 소명자료 확인 후,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선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서류 예시: 공인어학성적, 봉사활동, 리더십활동, 동아리활동, 수상실적, 특별활동 등 ▪ 활동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서식(활동증명서)으로 제출 가능함 ▪ 선택서류 작성에 대한 자세한 유의사항은 차후 모집요강 참조 ※ <참고> 어학능력 관련 교육부 권고사항: 토픽(TOPIK) 3급 이상, TOEFL(PBT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 TOEIC 700점 이상 	

3. 북한이탈주민(3월 입학, 정원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가.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제한 없음

나. 지원자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총 점
	서류심사	면접고사	
일괄합산	40%	60%	100%

라. 전형방법

-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서류심사에서 자격미달, 서류 미비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 최종 합격인원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예비 후보자 및 충원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 면접고사 결시자 및 과락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 면접고사 안내
 - 평가방법 : 면접위원 3인이 지원자 1인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 평가영역 : 인성 및 창의성

마. 제출서류

·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차후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비고	제출 방법
입학원서 1부	· 컬러사진 업로드	인터넷 원서접수 시 제출
자기소개서 1부		
추천서 1부	· 우리 대학교 소정 양식 · 학교장, 교사, 목사 등 추천 가능	우편 제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로 대체가능	
고등학교 성적 및 졸업증명서 각 1부 또는 학력인정증명서 1부	·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국내고교 출신자는 학생부로 제출 가능함) · 북한소재 고교 졸업자는 학력인정증명서 제출(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함)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및 합격증명서 각 1부	· 국내에서 고졸 검정고시 학력을 취득한 자	
선택서류	· 선택서류 예시: 수상실적, 봉사활동 증명서, 특별활동 증명서 등 · 활동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서식(활동증명서)으로 제출 가능함 · 선택서류 작성에 대한 자세한 유의사항은 차후 모집요강 참조	

4. 외국인 (3월/9월 입학, 정원외)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가. 모집단위 및 인원

모집단위	전 학부 (자율전공)
선발인원	제한 없음

나. 지원자격

부모 및 학생이 모두 생득적 외국인(순수 외국인)인 경우와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시민권 획득 등)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사정단계	선발비율(%)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	
		서류심사	면접고사
1단계	제한 없음	100%	
2단계	제한 없음	50%	50%

라. 전형방법

- 1단계 전형 : 서류심사
 -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사정의 결과는 합격, 불합격으로 처리합니다.
- 2단계 전형 : 면접고사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에 따라서 성적순으로 선발합니다. 최종 합격 인원은 2단계 성적을 기준으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합니다.
 - 예비 후보자 및 총원 합격자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 평가영역 : 인성 및 창의성

마. 제출서류

-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차후 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No.	제출서류	우리대학 지정서식 사용
필수서류	입학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서약서 1부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1부 ※ 만점기준이 명시된 고교 성적증명서 제출	
	고등학교 재학사실증명서 1부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지원자의 여권사본과 국적이 표기된 신분증 사본 각 1부	
	부모의 국적 증명서(여권사본 또는 국적이 표기된 신분증 사본 등) 각 1부	
	지원자와 부모의 관계 입증 서류(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학력조회 동의서 1부	○
	재정지원 확인서 1부	○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US\$ 10,000 이상 은행잔고증명서 (1개월 이상 예치) 1부 (한동코너스톤장학금 신청자는 제출여부 선택가능)	
	추천서 1부 - 추천인 : 선교사, 출석교회 목사, 출신고교 학교장, 출신고교 교사	○
선택서류	한동코너스톤장학금 신청서 1부	○
	한국어 또는 영어능력 입증 서류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영어능력시험: TOEFL(PBT 550, CBT 210, iBT 80), IELTS 5.5, TEPS 550, TOEIC 700점 이상	
	SAT / IB / GCE A-Level / AP 등의 공인 성적, 각종 상장,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각종 특별활동 증명서, School Profile 등	



H A N D O N G G L O B A L U N I V E R S I T Y

à 2 ß ® h

ßQßy &i ..&

ß ™ (



Honesty changes the world.
Integrity moves the world.

정직이 세상을 바꿉니다. 성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이사야 58: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의 · 방법으로 · 하나님의 · 인재를 · 양성하는 · 하나님의 · 대학



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입학처